

# 3 협회 검인증사업 추진 계획

❖ 본 글은 협회가 추진하는 2004년도 검인증사업 추진 계획 내용을 회원 및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상하수도용 자재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및 기준을 제정·보급하여 상하수도용 자재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의 표준을 확립함으로써 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물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표준의 준수를 위한 엄격한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상하수도용 기자재의 공정한 거래에 기여하여 우리나라의 상하수도분야의 발전과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상하수도용 자재에 대한 검인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올바른 검인증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용 자재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용자재기준은 수도법시행령 제18조의

2(수도용 자재기준)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1조의2(하수도용 자재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13조제2항(하수도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하)수도용자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 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 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7.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



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의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하수도법 시행령에 한정)

#### 8.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각 호에서 말하는 제품은 KS인증을 받은제품(1호), 우수한 단체표준 인증제품(2호), 한국상수도협회가 인증한 단체표준제품(3호), ISO인증기업에서 생산한 제품(4호), 환경마크인증제품(5호), EM, NT, GR인증품(이상6호), 신뢰성규격인증품(7호), KT마크 획득제품(8호) 등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수도용 자재 기준이 상수도와는 별개인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에 의해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상수도용자재가 갖추어야 할 품질특성의 고려가 미흡하거나 생산자 단체(조합)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

제품이 아닌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등은 수도 또는 하수도시설이 요구하는 품질특성치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일부 제도들에 대해서는 인증심사 과정이나 사후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 소비자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상수도분야의 질적 향상과 물산업의 해외진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시설이 갖추어야 할 품질특성치(용출성능, 내압성능, 역류방지성능, 장기내구성 등)를 국제수준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을 개발하고, 표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엄격하게 판정하여 질 낮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될 것이다.

협회에서는 이를 위해 2005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수도용자재 인증업무추진을 목표로 그 전단계인 협회단체표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체표준개발은 금년도에 98건, 2005년도에 약 100건의 규격 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규격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규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광역시 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부서의 장을 비롯하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소비자 기관의 담당부서의 장을 협회 표준화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술표준원의 분야별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표준심의위원인력풀을 구성하여 제정규격의 특성에 따라 사안별로 표준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협회의 규격제정 우선순위는 수도분야에서는 수도용자재가 갖추어야 하는 성능기준과 시험방법에 대해 우선 개발하고, 하수도분야에서는 관거정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하수도관 규격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2004년도 규격제정 계획(총 98종)

■ A(기본), B(기계), D(금속), F(토건) 분야 : 53종

기호	제품군명	규격종류
A1 (6종)	시험방법	수도용 기구의 내구성시험방법, 내압성능시험방법, 부압파괴성능 시험방법, 수격한계성능 시험방법, 역류방지성능 시험방법, 내한성능시험방법
A2 (3종)	용출시험	수도용기구의 침출성능시험방법, 침출시험방법, 침출액 분석방법
B1 (5종)	중형밸브	버터플라이 밸브의 면간 및 주요치수, 버터플라이밸브(웨어형 고무시트), 급속공기밸브, 소프트실 (슬루스) 밸브, 보수밸브
B2 (6종)	소형밸브	새들 분수밸브, 새들 분수밸브(PE), 수도용 지수밸브, 감압밸브, 역류방지밸브, 역류방지밸브(감압식)
B3 (4종)	계측/계량	수도미터(익차형 단식-건식/습식), 수도미터(접선류복식-건식/습식), 수량계(고압용), 유량계(전자)
B4 (3종)	펌프	소형 다단 원심 펌프, 소형 와류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D1 (2종)	스테인리스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D2 (6종)	강관 류	수도용 대구경 도복장 강관 이형관,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수도용 예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고팅강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수도용라이닝 강관용 관단방식형 이음쇠,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D3 (2종)	주철관	하수도용 닥타일 주철관, 하수도추진공법용 닥타일 주철관
F1 (4종)	여과제	수도용 망간 모래 시험방법, 수도용 안트라사이트 시험방법, 수도용 여과모래 시험방법, 수도용 여과자갈 시험방법
F2 (6종)	주철제	수도용 주철 지수밸브 보호통, 하수도용 주철제 맨홀 뚜껑, 하수도용 주철제 방호 뚜껑, 수도용 2단식 지수밸브 보호통, 수도용 나사식 제수밸브 보호통, 수도용 밸브 캡
F3 (2종)	콘크리트제	수도용 콘크리트 지수밸브 보호통, 하수도용 콘크리트 소형 맨홀
F4 (4종)	콘크리트관	하수도용 소구경 추진공법용 철근 콘크리트관,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하수도용 철근콘크리트관 난형관, 하수도 추진공법용철근콘크리트관

■ M(화학) 분야 : 45종

기호	제품군명	규격종류
M1 (4종)	PVC 관	하수관(경질염화비닐-구조형), 하수도관(경질염화비닐관), 하수도관 (추진공법용 경질염화비닐), 하수도난형관(경질염화비닐)
M2 (11종)	PE 관	수도용 관(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관-고밀도-수도관, 폴리에틸렌-중밀도-수도관, 수도(폴리에틸렌-중밀도)이음관, 폴리에틸렌관 트랜지션 이음관, 폴리에틸렌관 용착식 대구경 이음관, 수도용관(폴리에틸렌 금속)이음쇠,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하수도관(폴리에틸렌), 하수도관(폴리에틸렌:구조형), 폴리우레탄 피복방법
M3 (12종)	수처리제	규산나트륨 용액, 메타인산나트륨, 소다회, 액체염소, 이산화염소 용액, 진한황산, 차아염소산 나트륨, 황산구리, 알긴산소다,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분말활성탄, 입상활성탄,
M4 (9종)	도장/접착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로 및 도장방법,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로 및 도장방법, 수도용 콘크리트 수조 내면 에폭시 수지도로 도장방법,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합성수지도로, 수도관 갱생용 무용제형 이액에폭시 수지도로, 수도용 조인트코트, 수도용 흑색 바니쉬, 수도용 콘크리트 수조 내면 FRP 라이닝 재료, 수도용 내열성 액상 싼-제
M5 (5종)	통/멘홀	하수도용 통(폴리프로필렌), 하수도용 멘홀(경질염화비닐 소형), 하수도용 통(경질염화비닐), 수도용 레진콘크리트제 박스, 하수도용 레진콘크리트 멘홀
M6 (4종)	복합재료	하수도관(강화플라스틱복합관), 하수도추진공법용유리섬유철근콘크리트관, 하수도관(레진콘크리트), 하수도관(추진공법용 레진콘크리트)

이러한 계획에 의해 상하수도용자재가 갖추어야할 주요 품질특  
성치로는 내구성능, 내압성능, 내한성능, 부압파괴성능, 역류방  
지성능, 수격한계성능, 침출성능 등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후속적으로 개발되는 개별규격에서 이러  
한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방침이다.

또한, 표준이 개발되고 표준에 의한 협회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매년 1회의 정기공장심  
사를 비롯하여 협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 그리고  
특별공장심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협회 인증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협회 책임 배상  
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현재 수도법시행령 및 하수도법시행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상하수도용자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각 분야별 관계전문가가 참여  
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취  
합하여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  
이다. ㉠